

대구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재화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6776
----------	------

발의년월일 : 2023. 9. 27.

발의의원 : 이재화, 김재용,
김지만, 박종필,
박창석, 손한국,
윤영애, 이영애,
이재숙, 이태손,
임인환, 전경원,
하중환 의원
(13명)

1. 제안 이유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화학물질의 위협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및 환경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나.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안 제10조)

다.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라. 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마.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바.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화학물질관리법」

나. 예산조치 : 부서협의 완료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 및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학물질로 인한 시민건강이나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6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대구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이하 “화학안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화학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주요 추진시책과 추진계획
2. 화학물질의 관리현황과 향후 전망

3.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4.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대책 수립

5. 지역 내 배출저감 시책의 수립·이행 및 사업장의 배출저감 지원 방안

6.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화학안전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사회재난 및 소방업무 소관 부서의 장, 구청장·군수에게 통보하고, 소방업무 소관부서의 장은 소방서에 시달하여야 한다.

제5조(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화학안전계획의 수립·변경

2. 제12조에 따른 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변경

3.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 및 비상훈련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화학물질 업무 소관부서 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사회재난 및 소방업무 소관부서의 장이 된다.

1.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화학·환경·보건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 및 민간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4. 그 밖에 시장이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④ 시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 개최가 필요한 경우 위원을 위촉하고 위원회의 안건심의가 종료되면 해촉한다.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간사)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화학물질 업무 소관부서의 장이 된다.

제9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비밀 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과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회 위원 임명·위촉 시 서약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화학안전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 상황 등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화학물질 안전관리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중 대구광역시의 관할구역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시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대구광역시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 제23조의4에 따른 대구광역시 화학사고대응계획(이하 “화학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 화학사고대응계획의 적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화학사고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사고 유형과 규모에 따른 화학사고대응계획의 적용범위
2. 화학사고 발생 시 시민 보호 및 대피에 관한 계획
3.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복구 계획 및 긴급구호

물자 지급 및 응급의료지원 계획

4. 그 밖에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화학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사회재난 및 소방업무 소관부서의 장, 구청장·군수에게 통보하고, 소방업무 소관부서의 장은 소방서에 시달하여야 한다.

제13조(교육·훈련) ① 시장은 화학물질의 관리를 담당하는 대구광역시 소속 공무원, 화학물질 사업자, 취급자 등에게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화학사고 발생 시 대응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화학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지방환경관서·소방서 등 화학사고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재정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운영자

2. 환경·안전교육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화학물질관리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해성으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늘 파악하고, 국민건강이나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학물질의 관리를 위한 오염도 측정, 조사·연구,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홍보시책 등을 강구하여야 하고,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

제6조(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① 환경부장관은 유해성·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사항에 속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의2(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8.>

1.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한 계획 또는 시책의 수립·시행

2.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운영
3.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4.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
5.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수립·이행의 확인 및 지원
6.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3조의4(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 대피에 관한 사항
2. 긴급구호물자 지급 및 응급의료지원 등 화학사고와 관련된 복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적정한 계획 수립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지역의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하거나 관할 소방관서의 장 등 화학사고 대응 관계 기관의 장이 화학사고에 대비·대응하기 위한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관련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제공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